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안태준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5990
----------	-------

발의연월일 : 2025. 1. 13.

발 의 자 : 안태준 · 전용기 · 문진석
정준호 · 맹성규 · 염태영
이연희 · 전현희 · 최혁진
소병훈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교통약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을 위하여 교통수단, 여객시설 및 도로를 계획 또는 정비한 시·군·구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대하여 인증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편의시설의 설치는 증가하였으나 시설을 연결하는 보도에 대하여 유아차 및 휠체어 사용자 등에 대한 이동편의 제공은 미비한 실정임. 또한 현행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인증 의무대상에 보도는 제외되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기도 함.

이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새로 지구단위 계획구역이 지정되는 경우 해당 구역 안에 설치되는 보도에 대하여 생활환경 인증을 의무화하여 인증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7조의2제4항).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의2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상시설”을 “대상시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에 따라 지정된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의 보도(步道)를 포함한다]”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교통수단 등 인증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의2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7조의2(교통수단 등 인증) ① ~ ③ (생 략)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설치하는 <u>대상</u> <u>시설</u> 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인증(제3항 후단에 따른 예비 인증을 포함한다)을 받아야 한 다. 1. ~ 4. (생 략) ⑤ ~ ⑦ (생 략)	제17조의2(교통수단 등 인증)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 <u>대상</u> <u>시설</u>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에 따라 지 정된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의 <u>보도(步道)</u> 를 포함한다]----- ----- ----- ----- -----. 1. ~ 4. (현행과 같음) ⑤ ~ ⑦ (현행과 같음)